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김 인 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는 교육안전의 범위로 보건안전을 포함하고 있으며, 보건안전에는 ‘약물 오남용 예방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최근 상위법인 「학교보건법」상 학생의 보건관리 규정이 ‘약물 오남용 예방’에서 ‘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’으로 개정된 바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